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8,583,561	17,057,507
일반회계	550,932,291	16,527,969
특별회계	17,651,270	529,538
기타특별회계	17,651,270	529,5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48,390	88,452
의료급여특별회계	1,213,984	36,420
자활기금특별회계	1,788,549	53,656
주택사업특별회계	24,302	72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5,656	2,87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236,218	7,087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486,714	14,601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5,744,330	172,330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71,362	74,141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608,465	78,2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00	99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30,000	9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

제 4 조 계속비사업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간주예산)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